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선거시행 세칙

제1장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선거 총칙

제1조 (목적 및 적용)

- 본 세칙은 충남대학교 통합회칙 및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칙에 의거하며 민주적이며 자율적인 선거를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본 세칙은 사회과학대학 정·부 학생회장 및 대의원장과 사회과학대학 소속 각 학과/부 정·부 학생회장 선거에 적용한다.

제2조 (원칙) 선거는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로 한다.

제3조 (선거권) 선거권은 사회과학대학 학사 과정에 재학중인 자가 가진다.

제4조 (선거시기) 사회과학대학 소속 자치기구 개시년도 이전의 11월 중으로 한다.

제5조 (선거운동)

- 본 세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한다.
- 유세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로 하며, 선거 당일에 선거운동은 금한다.
- 회원이 아닌 자와 당해년도 학생회 임원, 대의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단 선거운동원 등록 마감일 전까지 사퇴시 선거운동은 가능하다.

제6조 (사회과학대학 선거관리위원회)

-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사회과학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둔다.
- 선관위는 사회과학대학 회칙에 의거 사회과학대학 대의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선거관리위원은 사회과학대학 대의원 및 선관위가 인정한 자에 한한다.
- 선관위 위원장은 사회과학대학 대의원회 의장으로 한다.
- 선거관리위원은 선거 및 투표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7조 (업무 및 권한) 선관위의 업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입후보자 자격심사

(자격 심사 후 입후보 확정 공고 시 해당 입후보자에 대한 징계 여부 포함 한다.)

2. 선거인 명부 작성

3. 선거 홍보용 유인물 및 벽보 작성

(유인물 및 간행물, 벽보등에 입후보자의 징계 여부를 포함한다.)

4. 선거운동의 방법과 일시의 조정

5. 선거장의 질서 유지 및 감독

6. 각종 선거사고와 이의 신청에 관한 조사 및 심의

7. 각 후보 진영의 정·부 후보, 참모장, 선거운동원의 출석요구 및 자료제출 요구

8. 선거 및 당선의 유효여부 및 재선여부와 당선자 결정

9. 선거시행세칙의 개정 및 제정

10. 기타 선거에 관련된 제반 업무

제8조 (투표구) 투표구는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제9조 (투표용지) 본회는 선거 투표용지를 선거 종료 후 30일 동안 보관할 의무를 가진다.

제2장 입후보

제10조 (입후보 자격)

1. 징계처분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징계는 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제적 등 학칙에 근거한 처벌에 준한다. 단, 징계기간이 지남과 동시에 자격이 부활한다.
2. 충남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 및 단과대학 부학생회장, 총 대의원회 상임위원 및 단과대학 부대의 원장, 각 학과/부 정·부 학생회장 및 대의원, 각 동아리 정·부회장은 원서등록 마감일까지 그 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단, 학과 소속 분과 동아리는 제외한다.
3. 학생회비를 납부한 자이어야 한다.

제11조 (입후보 등록 서류)

1.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 등록원서와 선관위에서 정한 소정의 구비서류를 등록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구비서류는 기본적인 인적·학적 사항과 추천인 명부를 포함한다.
3. 사회과학대학 정·부 학생회장과 사회과학대학원장의 경우 전체 유권자의 7%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단, 추천인 중 특정 학과의 비율이 30%를 넘지 못한다.
4. 사회과학대학 소속 학과 및 학부 정·부 학생회장과 대의원의 경우 전체 유권자의 20%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5. 후보자 등록 서류상의 약력, 공약, 징계내역 등의 사항을 빠짐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6. 후보자 등록공고와 동시에 해당 후보자의 공약을 언론 매체를 통해 공고한다.

제3장 투·개표

제12조 (투표)

1. 선거인은 선관위의 지시에 따라 직접·비밀로 소정의 투표용지에 투표한다.
2. 선거인은 학생증·주민등록증·그 밖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사진이 첨부되어 있고 검인된 증명서에 한한다.)를 제시하고 선거인 명부에 확인을 받은 후 투표하여야 한다.
3.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와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었더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다.
4. 투표는 선거일정에 따라 당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실시하며 투표율이 재적회원의 40% 미달인 경우에는 당일 오후 8시 30분까지 연장투표 혹은 익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연장투표를 한다.

(단, 연장투표의 경우 상시 집계하여 40% 이상일 경우 투표를 마감한다.)

제13조 (개표)

1. 개표는 선관위에서 진행한다.
2. 개표는 투표 완료 후 당일 3시간 이내에 선관위의 결정에 의해 위원장의 선언 후 실시한다.
3. 투표 완료 후 투표함은 선관위와 각 후보자 측 참관으로 개표 시까지 보관한다.

제14조 (무효표)

1. 다음에 해당되는 표는 무효표로 한다.
 - ① 선관위에서 지정한 투표용지나 기표도구가 아닌 경우
 - ② 복수후보자에게 기표한 경우
 - ③ 기표하지 아니한 경우
 - ④ 후보자 간의 분리선에 기표한 경우
 - ⑤ 기표용지의 옆선을 벗어나 투표한 경우
2. 다음에 해당되는 투표함의 모든 표 혹은 선거는 무효로 한다.
 - ① 투표함의 사방을 봉한 후 경계선에 선관위 위원장의 직인 또는 서명이 생략된 경우
 - ② 선거인 수와 투표지 수가 다른 경우

제4장 당선 및 처벌규정

제15조 (당선)

1. 최다 득표자를 당선으로 한다.
2. 전체 유권자 중 최종 투표자 수가 **40%** (배부된 투표용지 기준) 미만일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3. 단독후보일 경우 찬·반 투표를 실시하며, 유효 투표수의 2/3이상 찬성으로 당선을 확정한다.

제16조 (처벌규정)

1. 선관위는 공명하고 자율적인 선거를 위해 선거요강에 명기된 사항과 기타 선관위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대해 주의와 경고, 후보자 자격박탈의 처벌규정을 둔다.
2. 전 항의 처벌규정에서 주의 2회는 경고 1회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경고 2회 시에는 후보자 자격을 박탈한다.

제17조 (처벌기준)

1.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의 1회에 처한다.
 - 가. 유세시간 외에 선거운동을 행할 경우
 - 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한 경우
 - 다. 학교 밖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 1회에 처한다.
 - 가. 타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
 - 나. 타 후보를 근거 없이 중상 모략한 경우

-
- 다. 선관위의 결정사항 및 시정요구를 지키지 않는 경우
 - 라. 선관위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 마. 선거 당일에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3.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후보자 자격박탈에 처한다.
- 가. 투표장 내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 나. 유권자를 상대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 다. 폭력·협박·납치 등의 방법으로 선거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제5장 재·보궐선거

제18조 (실시)

- 1. 사회과학대학 정·부 학생회장 및 대의원장, 각 학과/부 정·부 학생회장 및 대의원이 유고 또는 탄핵되었을 때 잔임 기간이 120일 이상일 경우 재·보궐선거를 실시한다.
- 2. 재·보궐선거의 연장선거 결과 낙선 혹은 정족수 미달일 경우, 입후보 자격이 박탈된다. 다만, 비상대책위원회의 청원이 있을 경우 재·보궐선거의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한다.
- 3. 재·보궐선거의 일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재량으로 결정한다. 단,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장 선거지침

제19조 (선거지침)

- 1.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본 세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 2. 선관위에서 승인한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측 정·부 후보, 참모장들 간의 합의사항은 선관위 동의 후 세칙과 동일한 효력을 발한다.(단, 합의사항을 문서화하여 보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10월 8일 공고와 동시에 발효된다. 2017년 08월 02일에 전면 개정한다. 2017년 12월 27일에 부분 개정한다.

제2조(개정발의) 이 세칙의 개정 발의는 대의원회 과반수의 요구로 발의한다.

제3조(개정) 개정 발의된 세칙은 대의원회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효한다.

제4조(보칙) 본회의 회칙이 총대의원회 산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시행세칙과 충돌할 경우 본 회칙을 우선시하며 기타 나머지 사항은 총대의원회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